(2쪽 중 제1쪽)

<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>

보내는 사람

○○세무서장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번지

₽ 000-000



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받는 사람

님 귀하

⊕ 000-000

- ※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(부동산임대업자 제외)를 위한 간편 신고서입니다.
- ⇒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, 영세율·재고납부세액·가산세·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정식 신고서(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4호서식)를 작성해야 하고, 정식 신고서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(www.nts.go.kr)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
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(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)

관리번호 신고기간 년 (월일~월일)

	상호	성명(대표자명)	사업자	·등록번호			
시업자	주민등록번호	전자우편주소		전화	사업장	주소지	휴대전화
	사업장 소재지			번호			

신 고 내 용

=	금	액	부가가치율	세 율	세	액		
 매출	21.6.30. 이전 공급한 분	(1)		×		< 10/100	7 F)	
매굴	21.7.1. 이후 공급한 분	(2)		×)	< 10/100	4	
공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 합계	21.6.30. 이전 공급받은 분	(3)		×			다	
제 세액 합계 제	21.7.1. 이후 공급받은 분	(4)		×			라	
, 신용카드매출금액	21.6.30. 이전 공급한 분 21.7.1. 이후 공급한 분	(5)		×			(I)	
		(6)		×			(H)	
액 의제매입세액 공제(면세농산물등 구입금액) (7)				×			(A)	
납부할 세액(⑦+ઃ-;						(8)		
예정고지세액				(9)				
차감납부할 세액{(8)-(9)}						(10)		

- (3):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,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, 세액란에는 (금액×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)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.
- (4):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,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적은 공급대가 합계액을, 세액란에는 (금액× 0.5퍼센트)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.
- (5):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회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시업자가 적으며,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회폐에 의한 매출액을, 세액란에는(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회폐 매출액 × 13/1,000,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/1,000)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(6):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,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, 세액란에는 (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× 10/1,000,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/1,000)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※ (5)와 (6)의 세액을 더한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,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,000만원을 한도로 적습니다. (7): 음식점업, 제조업 사업자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받아 음식점업, 제조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
- (7): 음식점업, 제조업 사업자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받아 음식점업, 제조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고,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는 2/102,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점업은 8/108(과세표준 4억원 이하는 9/109), 제조업은 6/106을 적용합니다.

면 세 수 입 금 액									
업 태	종 목	업종코드	금 액						
(11)									
(12)									
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14조제3항 및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(서명 또는 인)

신고인

세무서장 귀하

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

										(2	쪽 중 제2쪽)
			매입서	금계산	서 총	합기	1				
구분		매입처수	매수	공급가액			세 액			 비고	
		베티지구	매구	십억	백만	천	일	백만	천	일	
	총합계										
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											
송된	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	을 분									
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은 분											
과세	기간 종료일 다음 달 -	발 11일까지 전	선송된	전자세	금계산	.서 오	식의 /	세금계신	서를 빌	급받은	분 명세
번호	거래처(상대		매수	공급가액				비고			
	사업자등록번호 성	상호(법인명)		십억	백만	천	일	백만	천	일	
1											
2											
3											
4											
5											
6											
7											
8											
9											
10											
※ 참	 부서류: 의제매입세액	공제신고서(의제	ᆜ 네매입서	│ 세액 공제·	를 받으	2려는	음식검	보업자의 보업자의	 경우에만	첨부합니	· (다)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											
<회송용>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보내는 사람											
으이시 OO구 OO동 OOO번지											
000											
9000-000											
				받는	사란						
						구 C) () 동	○○○번	지		
					세무서						
										웃0	000-00